

UCP 해설

유 하상

제 7 주

UCP 제33조-39조

유 하상

제33조 제시기간

제33조

■ 제33조 제시기간

제 33조 제시시간
은행은 그 은행영업시간 이외의 제시를 수리할 의무가 없다.

■ 제33조 해설

제33조 제시기간

제33조

■ 제33조 제시기간

제 33조 제시시간

은행은 그 은행영업시간 이외의 제시를 수리할 의무가 없다.

■ 제33조 해설

제34조 서류의 유효성에 대한 면책

제34조

■ 제34조 서류의 유효성에 대한 면책

제 34조 서류효력에 관한 면책

은행은 모든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성 또는 법적 효력에 대하여 또는 서류에 명시되거나 또는 이에 부가된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또는 특별조건(particular conditions)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또한 은행은 모든 서류에 표시되어 있는 물품, 용역 또는 기타 이행의 명세, 수량, 중량, 품질, 상태, 포장, 인도, 가치 또는 존재에 대하여 또는 물품의 송화인, 운송인, 운송주선인, 수화인 또는 보험자, 또는 기타 당사자의 성실성 또는 작위 또는 부작위, 지급능력, 이행능력 또는 신용상태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서류의 유효성에 대한 면책

제34조

■ 제34조 해설

서류심사에 있어서의 은행의 면책사항(제34조)

- * 제시된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여부 또는 법적인 효력
- * 상품의 명세, 수량, 품질, 상태, 포장, 인도, 가격, 실재여부
- * 하송인, 운송인 등의 성실성, 신용상태 등에 아무런 책임이 없음.
- * 위조된 B/L을 매입한 경우로서 위조의 당사자이거나, 위조된 것을 알았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문면상 위조된 것이 명확한 경우등) 은행은 면책되지 아니함
- ICC Document 470/371/ 470/373 Opinions(1980-1981) P27 R76

5. 분실된 서류에 대한 추가언급

지정은행이 일치하는 서류를 발송하는 도중에 분실되더라도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정은행의 부담은 경감되었고, 발행은행과 확인은행의 부담은 추가되었다

제35조 송달 및 번역에 대한 면책

제35조

■ 제35조 송달 및 번역에 대한 면책

제 35조 송달 및 번역에 관한 면책

모든 통신문, 서신 또는 서류가 신용장에 명기된 요건에 따라 송달 또는 송부된 경우, 또는 은행이 신용장에 그러한 지시가 없으므로 인도서비스의 선정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행하였을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통신문(message)의 송달 또는 서신이나 서류의 인도 중에 지연, 분실, 훼손 또는 기타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지정은행이 제시가 일치하고 있다고 결정하고 그 서류를 발행은 또는 확인은행에 발송하는 경우에는, 서류가 지정은행과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간에 또는 확인은행과 발행은행간에 송달중에 분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지정은행이 지급이행 또는 매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지급이행 또는 매입하거나, 또는 그 지정은행에 상환하여 야 한다.

은행은 전문용어의 번역 또는 해석상의 오류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신용장의 용어를 번역함이 없이 이를 송달할 수 있다.

제35조 송달 및 번역에 대한 면책

제35조

■ 제35조 해설

Message 전달과 관련한 은행의 면책<제35조>

- 통보, 서신, 서류의 송부중 분실, 지연
- 전신 송신 중 발생하는 지연, 훼손, 오류
- 전문 용어의 번역상의 오류

광의의 서류 (Documents)

- 운송서류(협의의 서류) : 해상, 항공, 복합운송, 육상, 우편, 특사배달 등
- 보험서류
- 상업송장
- 원산지증명서 등

제36조 불가항력

제36조

■ 제36조 불가항력

제 36조 불가항력

은행은 천재, 폭동, 소요, 반란, 전쟁, 폭력주의의 행위에 의하거나 또는 동맹파업 또는 직장폐쇄에 의하거나 또는 기타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한 은행업무의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은행은 그 업무를 재개하더라도 그러한 업무의 중단 동안에 유효기일이 경과한 신용장에 의한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행하지 아니한다.

■ 제36조 해설

불가항력

은행은 천재 지변, 폭동 등 불가항력적 원인이나 파업 등 업무 중단으로 어떤 의무나 책임도 없음. 업무 중단 기간 중 유효기간 만료 시에도 지급, 매입 의무 없음<제36조>

제37조 지시 받은 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7조

■ 제37조 지시 받은 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 37조 피지시인의 행위에 대한 면책

a. 발행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타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은행은 그 발행의뢰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이를 행한다.

발행은행 또는

b. 통지은행이 타은행의 선정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은행이 타은행에게 전달한 지시가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행은행 또는 통지은행은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c. 타은행에게 서비스를 이행하도록 지시하는 은행은 그 지시와 관련하여 그러한 타은행에 의하여 부담되는 모든 수수료, 요금, 비용 또는 경비(“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신용장에 비용이 수익자의 부담이라고 명기하고 있고 비용이 대금으로부터 징수 또는 공제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발행은행은 비용의 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은 수익자에 대한 통지가 통지은행 또는 제2통지은행에 의한 통지 비용의 수령을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하여서는 아니된다.

d. 발행의뢰인은 외국의 법률과 관행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의무와 책임에 구속되며 이에 대하여 은행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제37조 해설

■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 38조 양도가능신용장

a. 은행은 그 은행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된 범위 및 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장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b. 이 조에서:

양도가능신용장이란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고 특별히 명기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양도가능신용장은 수익자(“제1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수익자(“제2수익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다.

양도은행은 신용장을 양도하는 지정은행 또는, 모든 은행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용장에 있어서, 발행은행에 의하여 양도하도록 특별히 수권되고 그 신용장을 양도하는 은행을 말한다. 발행은행은 양도은행일 수 있다.

양도된 신용장은 양도은행에 의하여 제2수익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c. 양도를 이행할 때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도와 관련하여 부담된 모든 비용(이를 테면, 수수료, 요금, 비용, 경비)은 제1수익자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d. 분할어음발행 또는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한, 신용장은 2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양도될 수 있다.

양도된 신용장은 제2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이후의 어떠한 수익자에게도 양도될 수 없다. 제1수익자는 그 이후의 수익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8조

■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 e. 양도를 위한 모든 요청은 조건변경이 제2수익자에게 통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제2수익자에게 통지될 수 있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양도된 신용장은 이러한 조건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f. 신용장이 2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2수익자에 의한 조건변경의 거절은 이로 인하여 양도된 신용장이 조건변경되어지는 기타 모든 제2수익자에 의한 승낙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조건변경을 거절한 제2수익자에 대하여는, 양도된 신용장은 조건변경 없이 존속한다.
- g. 양도된 신용장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인(있는 경우)을 포함하여 신용장의 제조조건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 신용장의 금액,
 - 신용장에 명기된 단가,
 - 유효기일,
 - 제시를 위한 기간, 또는
 - 최종선적일 또는 정해진 선적기간,
- 이들 중의 일부 또는 전부는 감액 또는 단축될 수 있다.
보험부보가 이행되어야 하는 비율은 이 규칙 또는 신용장에 명기된 부보금액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증가될 수 있다.
- 제1수익자의 명의를 신용장상의 신용장발행의뢰인의 명의로 대체될 수 있다.
발행의뢰인의 명의를 송장 이외의 모든 서류에 표시되도록 신용장에 의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구는 양도된 신용장에 반영되어야 한다.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8조

■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h. 제1수익자는 신용장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수익자의 송장 및 환어음을 그 자신의 송장 및 환어음(있는 경우)으로 대체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대체시에, 제1수익자는 자신의 송장과 제2수익자의 송장 사이에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신용장에 따라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제 수익자가 그 1. 1 자신의 송장 및 환어음(있는 경우)을 제공하여야 하지만 최초의 요구시에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수익자에 의하여 제시된 송장이 제2수익자에 의하여 행해진 제시에 없었던 불일치를 발생시키고 제1수익자가 최초의 요구시에 이를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은행은 제1수익자에 대한 더 이상의 책임 없이 제2수익자로부터 수령한 서류를 발행은행에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j. 제1수익자는 그 자신의 양도요청으로 지급이행 또는 매입이 신용장의 유효기일을 포함한 기일까지 신용장이 양도된 장소에서 제2수익자에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이것은 제38조 h항에 따른 제1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k. 제2수익자에 의하거나 또는 대리하는 서류의 제시는 양도은행에 행해져야 한다.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8조

■ 제38조해설

양도가능신용장상의 문언

기존의 UCP500에서는 오직 Transferable만이 신용장의 양도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명시적인 표현을 삭제하였다. 즉, transferable은 물론 assignable, divisible, fractional, transmissible등의 표현도 모두 양도가능신용장의 표현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양도가능신용장상의 문언

양도은행의 제한("Transferable")

-지급, 인수, 매입이 수권된 은행, 자유매입 신용장은 L/C에서 지정된 양도은행

* 1st Beneficiary는 양도 요청시 추후 내도 되는 조건변경 통지를 원 수익자 또는 양수인에게 직접 통지할 것인지를 취소불능 조건으로 지시

•신용장이 양도된 이후 금액이 증액된 조건변경 통지서가 내도된 경우 업무처리방법

* 조건변경에 대하여 Partial T/S 경우 일부 양수인들의 동의 또는 거절 경우의 효력발행

* 양도수수료의 지급인 → First Beneficiary

* 양도는 1회의 원칙 (1st Beneficiary 에게 재양도 (Retransfer)는 가능함)

•양도의 조건 : 원칙적으로 신용장 조건 범위 내에서 양도취급

■ 제38조해설

예외사항

- 신용장금액, 단가, 유효기간, 서류제시기간, 선적기간 : 단축, 감액가능
- 부보금액 : 증액가능 단순양도 및 조건변경부 양도

국내 및 국외양도

Sky T/S

* 제1수익자의 권리 : 어음 및 송장 대체 권리, 양도지에서의 매입 요청권, 양도자의 명의 대체

(예외) 신용장대금의 양도 : 신용장 양도와 무관하게 대금의 양도 가능<제39조>

제39조 대금의 양도

제39조

■ 제39조 대금의 양도

제 39조 대금의 양도

신용장이 양도가능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은 적용가능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신용장에 의하여 수권되거나, 또는 될 수 있는 대금을 양도할 수익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는 대금의 양도에만 관련되어 있으며 신용장에 따라 이행할 권리의 양도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 제39조해설

일자와 관련한 해석기준

<< 일자 관련한 해석 기준 >>

1. 신용장 발행일 이전의 일자가 표시된 운송서류<제14조>
- L/C상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수리 가능(보세창고도 거래 반영)

* L/C발행일자 이전의 서류 수리 가능 조건

- ① L/C상 금지 문언이 없으며,
- ② L/C유효기일을 준수하고
- ③ 서류 제시기간을 충족할 것

2. 유효기일 및 유효한 장소 명시<제6조>

- (1) 지급, 인수, 매입을 위해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 최종 일자와 유효한 장소를 명시
- (2) 은행의 휴업일 등으로 인한 유효기일, 제시기일의 연장 : Coveing Letter에 동 연장사실을 표시하여 분쟁 사전방지<제29조>

<표시문구예시>

The documents were presented within the time limits exten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a) of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일자와 관련한 해석기준

* 유효기간, 제시기간, 선적기일의 연장

- 은행 휴무시 등에는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됨
- 제시기간의 연장은 유효기일의 연장과 동일
- 선적기일의 자동연장은 불허함

(3) 기일 표시 방법(선적기간 관련<제3조>)

① To, Until, Till, From : 당해 일자 포함, After : 당해 일자 제외

② First half : 1일 ~ 15일, Second half : 16일 ~ 말일

③ Beginning : 1일 ~ 10 일, Middle : 11일 ~ 20일, End : 21일 ~ 말일

3. 서류 제시기간<제14조>

(1) 선적일 후 지급, 인수, 매입을 위하여 서류가 제시되어야 할 특정기간제시 기간 경과 또는 기간 명시가 없을 경우 선적일자 후 21일(Presentation not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 서류 제시 기한 → S/D + 21days) 경과 후 제시되면 수리 거절 (Stale B/L)

(2) 은행 영업시간 경과후 제시된 서류는 수리의무 없음<제33조>

drawing)한 환어음

4. 선적일의 개념<제3조>-

- 본선적재(loading on board), 발송(dispatch), 운송을 위한 인수(accepted for carriage), 우편수령일(date of post receipt), 접수일(date of pick-up), 수탁(taking in charge)등
-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등 표현은 무시
- on or about : 특정일 전·후 5일 동안 선적(총11일)

5. 신용장 금액, 수량 등의 해석<제30조>

(1) about, approximately 의 해석금액, 수량, 단가의 10% 과부족 허용

(2) 수량의 5% 과부족 허용(more or less조항)

- L/C상 금지문언이 없을 것
- 어음 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일 것
- 포장 단위 또는 개개 품목으로 숫자를 명시하고 있지 않을 것
- pcs, dozens, Boxes, Cartons : 5% 편차 불 허용
- 곡물, 광산물 등 Bulk Cargo : 5% 편차 허용

(3) 분할선적 금지하는 신용장에서 물품이 전량 선적되고 단가 감액이 없는 경우에도 5%이내

- 감액(Short drawing)한 환어음

비용의 부담

- * 은행서비스를 지시한 당사자는 모든 비용 부담의무<제37조>
- * 상환은행의 비용은 개설은행 부담<제13조>
- 외국환거래약정서에 의거 수입상이 최종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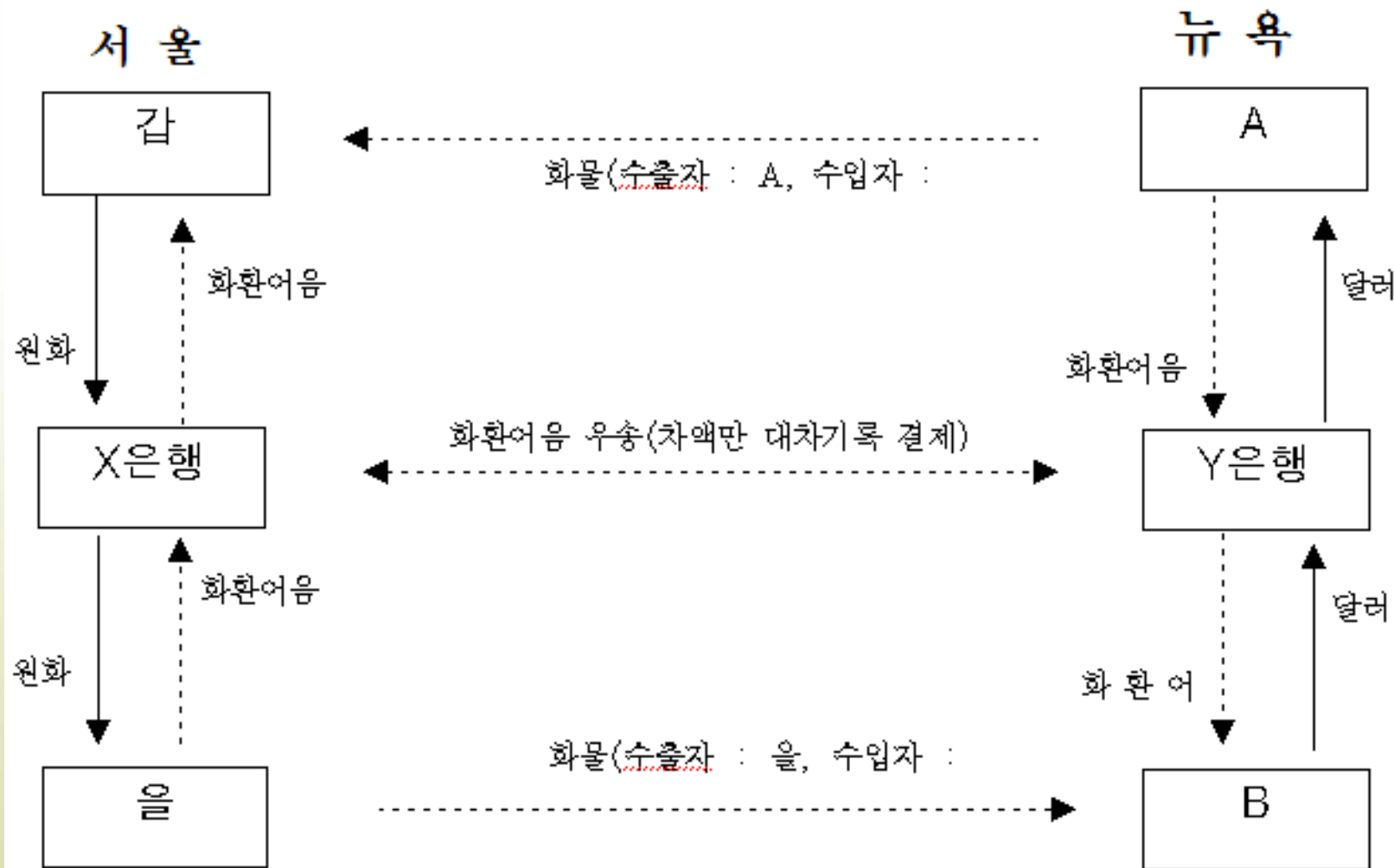
『 제5조 수수료, 비용 및 손해의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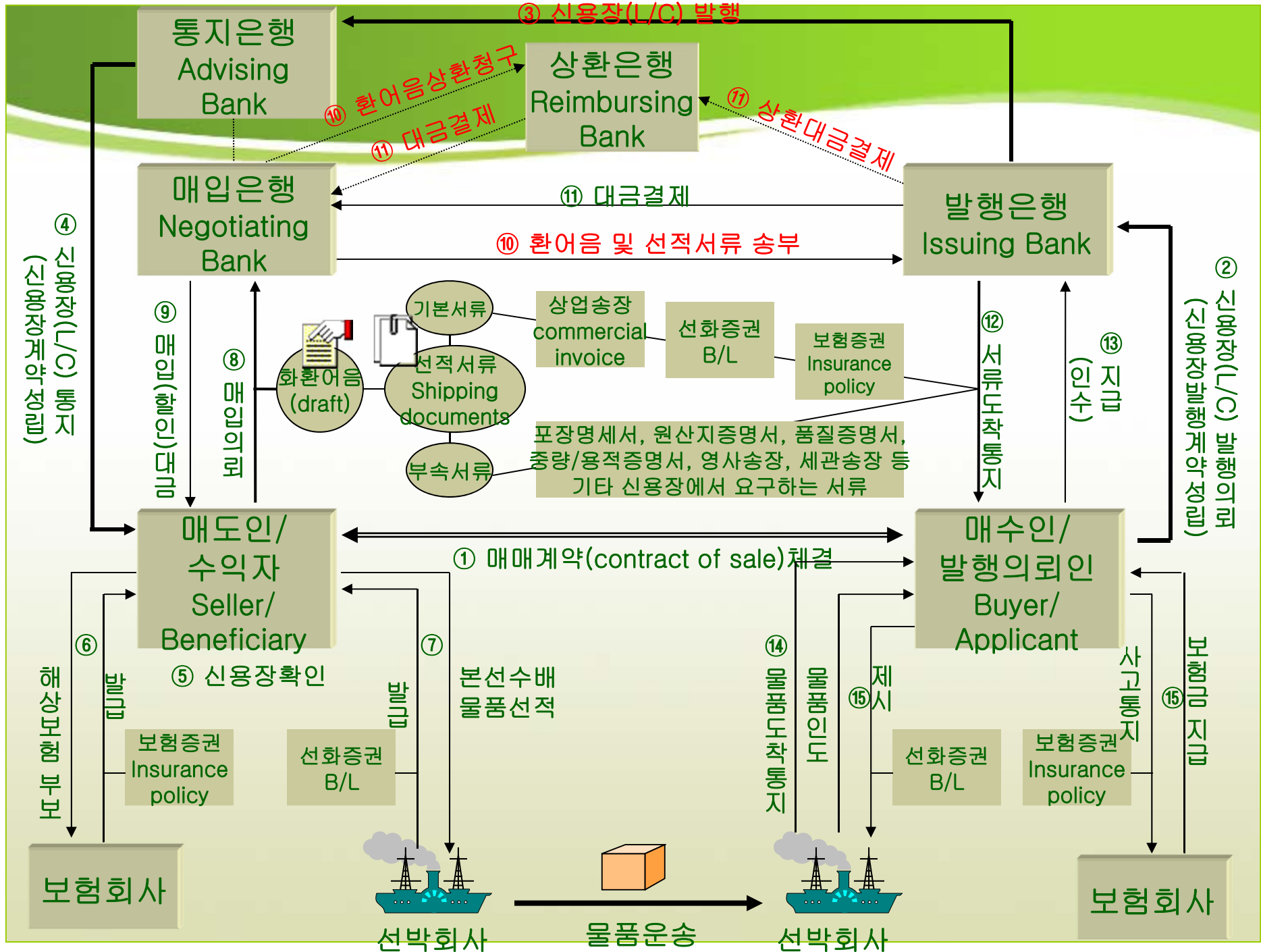
“본인은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제 1 조의 거래에 따른 이자, 할인료, 수수료, ... 기타 모든 비용 및 손해를 부담하여, ... 청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외환과 환율

나. 환율

■ 역환의 대금결제 흐름도







감사합니다.